717120F BF 3212F

The Abolition of Marriage **결혼제도 폐지**



●Eric Enlow 교수

에릭 G. 엔로우 교수는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장이다. 엔로우 원장은 기독교와 법 전문가로서 성경과 체계적이 고 역사적인 그리스도와 법의 관계를 다루는 세 가지 과목들을 법률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는 또한 불법행위와 지 적재산권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출신인 엔로우 원장은 2004년에 가족과 함께 포항으로 이주 해 법률대학원의 교수로 부임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Yale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수여 받았고, Order of the Coif의 회원이다. 로스쿨 졸업 후 그는 제8차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Richard S. Arnold 판사의 clerk으로 일한바 있으며, 그 후 로펌 Blackwell Sanders Peper Martin에서 지적재산권과 국제법, 항소법의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Does Recognizing Same-Sex Marriage Affect Other Marriages?

동성결혼 승인이 다른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가?



The answer is certainly, "yes". But,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is often discussed as if it concerns only the expansion of rights already afforded to heterosexuals so as also to include homosexuals. (The paradigm here is the government benefits which some states provide to married couples but not to unmarried couples, e.g., support benefits on the death of a spouse or evidentiary privileges.)



그 대답은 명확하거세 '그렇다'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문제는 종종 마치 그것이 오 로지 이성애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에 동 성애자들 또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 처럼 논의되고 있다. (전형적 예시로는 몇몇 주에서 결혼한 커플들에게만 주는 정부의 지 원이 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증거의 구성요소를 갖춘 특권 들)

비동성애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변화들에서 그들의 결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가?

Do Non-Homosexuals Have an Interest in Protecting their Marriages from Proposed Changes?

오버지펠 대 호지스 사건(Obergefell v. Hodges)은 미국의 동성결혼이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권에 속하는지에 대 한 미국 연방 대법원 랜드마크 판례이다. 제임스 오버지펠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미국의 모든 주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두 사람의 동성결혼은 합법이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던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한 사람은 모든 주에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 Supreme Court opinion, Obergefell v. Hodges — June 26, 2015

bergefell decision illustrates, recognizing same-sex marriages cannot mean the simple extension of a set of rights to homosexuals;

it must change all marriages. The reason is that marriage i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tradition has conditioned and defined marriage in relation to and consent to sex open to childbirth; accordingly, changing the definition of sex to include acts of sodomy changes the definition of all marriages.

그러나 이는 명확하거네 틀렸다.

오버지펠 대 호지스 시전의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동성결혼을 공인하는 것은 단순 히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확대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그것은 모든 결혼제도를 변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관습 법과 민법의 전통 안에서의 결혼은 출산시의 성별에 기반하여 좌우되고, 정의되어왔다. ; 따라서, 성관계의 정의에 동성 성관계가 포 함되는 것은 모든 결혼의 정의를 변화시킨다.



FIRST

First. it's important to be clear that without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no limitation prevents homosexuals bisexuals or asexuals from marrying. For example, a man attracted to men, attracted to men and women, or attracted to no sex could marry a woman. For that matter, there was no limit on a man and woman who were not sexually attracted to one another from marrying nor any attention paid in assigning the rights and duties of marriage to sexual attraction ; marriages were not initially conditioned on sexual attraction nor did they terminate when sexual attraction terminated The right to marry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was completely open to homosexuals, bisexuals, asexual and heterosexuals without attraction to their spouse.

첫째,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이 없더라도, 동 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무성애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분명 하다.

예를들어, 남성에게 끌리거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끌리거나, 어떤 성에게도 끌리지 않는 남자도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서로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 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제한이 없었고, 결혼 의 권리와 의무를 성적 끌림에 두지 않았다. 결혼은 처음에는 성적 끌림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고 성적 끌림이 없어졌을 때 종결되는 것 이 아니었다.

그들의 배우자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지못한 다고 할지라도 이성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는 동성애자, 양성애자,무성애자, 이성애자 에게 완전히 열려있었다.



SECOND

Second, and more importantly, U.S law before Obergefell defined marriage in terms of esssential rights and duties that could only be performed by a man and a woman together. Most obviously, before Obergefell, husbands and wives had mutual duties of sexual relations. As Paul explained to the Corinthians, $[1Co 7; 3\sim 5]$

3. The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to his wife, and likewise the wife to her husband.

4. The wife's body does not belong to her alone but also to her husband. In the same way, the husband's body does not belong to him alone but also to his wife. 5. Do not deprive each other except by mutual consent and for a time, so that you may devote yourselves to prayer. Then come together again so that Satan will not tempt you because of your lack of selfcontrol. 더 중요한 부분인 두 번째로, Obergefell사 건(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이전 미국법에서는 결혼을 남성과 여 성이 함께할 때에만 수행될 수 있는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점으로 정의했다. 가장 분명 한 것은 Obergefell사건 이전에 남편과 아 내는 성적관계에 대한 상호의무를 가지고 있 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고린도전서7: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 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been defined as a legal arrangement 로간, 오직 서로를 통한 합리적인 성관계에 involving at its essential center a man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법적 합의로 정의되 and a woman consenting for life to 어 왔으며, 둘 다 아이를 갖는 것에 개방되어 reasonable sexual relations with one 있었고, 상대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의 another, and only with one another, where both were open to having 호경제적 지원 및 개인적 섬김) children, and the other attendant economic and social rights and duties appropriate to such a relationship. e.g., mutual economic support and personal service. Marriage satisfied a number of purposes : (a) supporting the couple against sin. (b) the provision of an institution for the raising up of godly offspring. (c) the companionship of the couple within this project.

Because all of these goals involved 이런 모든 목적들이 '남성과 여성간의 성관 consent to sex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law provided a number of 혼에 대한 많은 보호들을 제공했다. related protections to marriage.

Marriage has always previously 결혼은 언제나 그 중심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 무는 그러한 관계에 적합했다. (예를 들어 상

결혼은 여러 목적을 충족했다

- (a)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도움
- (b)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관 제공
- (c) 이 과업내에서의 두 사람간의 동역자관계

계'에 대한 동의를 포함했기 때문에. 법은 결



결혼에 대한 법적 보호들

First, a marriage was considered invalid or void if the man or woman was incapable of having sex ; also, the marriage was voidable if either committed fraud with relation to sex, e.g., if they married with a secret intent not to have sex, not to have children, or they hid a known sterility or sexual disease. A willingness or capability to engage in mere acts of sexual "intimacy," acts that were not open to procreation, e.g., the set of acts of sodomy which are open to both same sex and opposite sex couples, was not enough to establish marriage.

Once a valid marriage was established, spouses had a duty not to withhold sexual relations unreasonably and equally a duty not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with anyone else. Spouses

had a duty to remain spatially together, to cohabitate in reasonable circumstances, and to

support children born of legitimate sexual activities.

먼저는 남자나 여자가 성적관계를 가질 수 없 다면 결혼은 무효 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성적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은밀한 의 도를 가지고 결혼을 했거나. 또는 불임이나 성병을 숨기는 등 성적관계에 대해서 상대방 을 속였다면 결혼은 무효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동성커플과 이성커플 모두에게 개방된 소도미 행위들 (손잡기에서 이성애적 성교를 흉내내는 삽입행위까지 자극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행위)같이 단지 성 적인 "친밀감"에 참여하며 생식(출산)을 거부 하는 행동에 관여하는 능력이나 마음은 결혼 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일단 유효 한 결혼이 이루어지면, 부부는 공간적으로 함 께 있어야하고, 합당한 환경에서 동거하며, 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돌 봐야할 의무가 있었다.



Finally, violations of these duties constituted grounds for divorce. especially adultery and structive abandonment of refusal to engage in sexual relations, which resulted in punitive consequences for the spouse defaulting on their obligations.

또한 이러한 의무들의 위반은 이혼,특히 간 통과 성관계 거부로 인한 유기(遺棄)(그 결 과 배우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결 abandonment including the con- 과를 초래하는)를 포함하는 유기의 법적 사 유가 되었다.

As the Obergefell case shows, any Court or legislature in holding that the state must provide marriage contracts for same-sex couples must change the nature of the marriage contracts for all (same-sex and male-female couples) so as to eliminate these essential duites with respect to sex and procreation.

> Obergefell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동 성 커플에게 결혼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법원이나 입법부는 성관계와 생식에 관 한 이러한 필수적인 의무들을 없애기 위해 모 든 커플(동성 및 남성-여성 커플)에 대한 결혼 계약의 본래적 성격을 변경해야만 한다

54 JANUARY 2020 - MARCH 2020

The reasion is simple: two people of the same sex cannot have sex or sexual relations open to procreation. But this is precisely what U.S law required before Obergefell The Obergefell "sexual intimacy" Court discusses as encompassing both proper sexual intercourse and sodomy, but this broad category cannot be defined in relation to children or in terms of any specific set of sexual activities. Instead, as the Obergefell case held, the idea of same-sex marriage itself presupposes that marriage is not at all about sex. It may involve proper sex or sodomy(any imaginable form of physical conduct that stimulates from handholding to penetrative acts simulating heterosexual intercourse) or nothing at all.



이유는 7년 단하다.

동성인 두 사람은 출산이 가능한 성관계 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Obergefell사건 이전에 미국 법이 요구한 것이다. Obergefell사건을 담당 한 법원은 "성적 친밀도"를 올바른 성교 와 동성간 성행위 양쪽을 포괄하는 것으 로 논의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범주는 자녀에 관해서나 특정한 일련의 성행위 의 측면에서 정의될 수 없다. 그럼에도 Obergefell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동성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는 결혼이 전혀 성 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그것은 적절한 성관계나 소도미 (손잡기에서 이성애적 성교를 흉내내는 삽입행위까지 자극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Marriage under the new definition. does not require a man and a woman because it does not involve the 을 위해 서로에게 몸을 맡기는 것' 자체에 대 consent of man and woman to give their bodies to one another for sex nor even the consent of a man and a man or a woman and a woman to give their bodies to one another for homosexual "sex " This changes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marriage for all marriages not directly by opening marriage to those of the same sex. but by eliminating sex; it does not extend to same-sex couples what once was given to opposite-sex couples. It alters the sexual character of marriage for all.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결혼은 남녀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적 결합 한 동의를 수반하지 않고 심지어 남자와 남 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적 '성교'를 위해 서 로에게 몸을 맡기는 것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성간의 결혼을 직접적으로 개방함으로써가 아니라 성별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결혼에 대한 필수적인 의 무와 권리를 바꾼다; 따라서 그것은 한때 이 성간의 부부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동성간의 부부들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모두에게 결혼의 성적 성격을 바꾼다.



In sum, before marriage, spouses had rights and duties with respect to sex. After Obergefell, for homosexuals and heterosexuals, any kind of "sexual intimacy" or no intimacy will suffice. "When sexuality finds overt expression in intimate conduct with another person(i.e. sex or sodomy) the conduct can be but one element in an personal bond that is more enduring. (p. 14)" 정리하면, Obergefell사건 전에 배우자들은 성관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에게 는 모든 종류의 "성교적 친밀감"이나 혹은 어 떤 친밀감도 없는 것도 상관없게 되었다. "성 생활이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행동(즉 성관 계나 소도미행위)의 공공연한 표현이 될 때 그 행위는 더 오래 지속되는 개인적 유대관 계의 단지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을 수 있 다.(p,14)"

Before Obergefell, sex was not an element; it was the essential element. Now, sex is secondary to a "personal bond", and whatever a "personal bond" means the Court is plain that it does not require anything pertaining to sex. This is new. The fundamental duty of marriage in Scripture, also according to Christian theologians, also according to the universal tradition of church discipline and all prior secular laws must be replaced after Obergefell by something that same-sex as well a opposite sex couples can do. Obergefell사건 이전에는 성관계는 그 저 하나의 요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필 수적인 요소였다. 이제 성관계는 "개인적 유대"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며, "개인적 유대"가 무엇이든 간에 법원은 성관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명백해졌다. 이건 새로운 것이다. 성경 과 기독교 신학자들, 교회 규칙의 보편적 인 전통, 그리고 이전의 세속적인 법에 따 른 결혼의 근본적인 의무는 Obergefell 사건 이후에 양성간 할 수 있는 것뿐 아니 라 같은 성이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질 것 임에 틀림없다.

"The nature of marriage is that, through its enduring bond, two persons together can find other freedoms, such as expression, intimacy and spirituality... whatever their sexual orientation"(p.13)

This is not what the nature of marriage was before Obergefell : consent to sex - not just experession or spiritually - was required. The mutual duty of the spouses to give their bodies to one another in sexual acts, protected unviersally hitherto by law, is replaced by a vague notion of mutual commitment that anyone can do with anyone.

The Obergefell decision changed all marriage contracts so that the conditions of validity, duties in marriage and conditions for divorce that once all hinged on sexual selfgiving are abolished. This has always been to sole central and essential definition of marriage in all ages. "결혼의 본질은 영원한 유대를 통해서 두 사 람이 함께 표현, 친밀감, 영성 같은 자유를 찾 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성적 지향성이 무엇이든"(p.13)

이것은 Obergefell사건 이전의 결혼의 본질 이 아니다. : 단지 표현이나 정신적인 것이 아닌 성적 결합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었다.

지금까지 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 호되어왔던 서로 간에 몸을 맡기는 배우자들의 상호적인 의무가 누구나 누구나도 할 두 있는 막면한 상호가 약독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Obergefell 법원의 결정은 모든 결혼 계약 을 변경하여 이전에는 모두 성적인 자발적 기여에 달려있던 법적 유효조건, 결혼에서의 의무, 이혼의 조건들이 폐지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결혼에서 언제나 유일한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정의였다.



Since the Obergefell Court has (1) eliminated the protections of the marital contract, (2) abolished the duties within marriage of sexual relations open to procreation and (3) ended the consequences of withholding sexual relations in marriage, we must conclude that Obergefell did not exte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to include homosexuals as it purported to do. Obergefell actually abolished marriage.

This is the destructive "equality" of Aesop's fable; because Kennedy could not create a tail for the tailless fox, he ordered all the foxes tails cut off. Because same-sex couples cannot fulfill the universal duties of sexual relation or perhaps because Kennedy did not see how to define sex in a legal manner to include homosexual "sex"- required in all marriage hitherto, he ended these duties for all. Obergefell 법원은 (1) 혼인 계약의 보호를 없앴고, (2) 출산에 동의한 결혼 내의 성관계 의무를 폐지했으며, (3) 결혼관계에서 성관 계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들을 종식시켰 기 때문에, 우리는 Obergefell사건이 그 주 장과는 다르게 단순히 '동성애자를 포함시키 기 위해 결혼제도를 확대시킨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Obergefell 사건은 실제 적으로 결혼을 폐지한 것이다.

· 이것은 이동 우화의 파괴적인

; 케네디는 꼬리가 없는 여우를 위해 꼬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여우 꼬리를 잘 라내라고 명령했다. 동성 커플은 지금까지 모 든 결혼에서 필요로 해왔던 성적관계의 일반 적인 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 혹은 아마도 케네디가 동성간 성관계를 포함한 성 관계를 합법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못했기 때문에 - 그는 모두에게 이런 성적관계의 일 반적인 의무를 끝내버렸다.



Obergefell created a new sexless institution, which we may admit deservedly applies to both same sex and opposite sex couples; for if an Obergefell "marriage" has nothing to do with sex, then truly there is no reason to restrict it on the basis of sex. But such an institution- like any existing economic union without rights of mutual sexual duty, such as a business partnership- is not marriage any more than a contract of concubinage or prostitution would be, though by contrast they would create such duties with respect to sex. Obergefell 사건은 성관계가 배제된 새로 운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동성 커플 과 이성 커플 모두에게 적용 되는 것이다 ; 만약 Obergefell판결에서 말하듯이 "결 혼"이 성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정 말로 성별을 기반으로 그것을 제한할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 마치 사업 파 트너 관계와 같이, 상호 성적 의무와 권리 가 없는 경제적 연합처럼 - 여러 배우자를 두는 것이나 매춘이 성적 관계에 대한 의무 를 만들지라도 결혼이 아닌 것과 같이 이러 한 새로운 기관은 결혼이 아니다.





In fact, even contracts for concubinage and prostitution have more in common with Christian marriage than an Obergefell "marriage" because, in order to include same-sex couples. actual sex has been expelled entirely from the matter of the marriage. Contracts of concubinage and prostitution. at least. are legal contracts concerning sexual relations, though only immoral and dishonorable ones; they are immoral and dishonorable because the sexual relations intended in prostitution and concubinage are unordered to children. raising children, nurturing fidelity between the couple or to the control of sexual immorality. They facilitate sexual immorality and disregard of children in the sexual relation

사실 심지어 여러명의 배우자를 두는 것이나 매춘을 위한 계약이 Obergefell사건의 '결 혼'보다는 기독교 결혼과 더 공통점이 있는 데, 왜냐하면 동성 커플을 결혼에 포함시키 기 위해서 실제 성별은 결혼 문제에서 완전 히 추방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배우자 를 두는 것이나 매춘의 계약은 적어도 성관계 에 관해서는 합법적인 계약이다. 비록 부도 덕하고 불명예스럽지만 말이다; 매춘과 다 처다부제에서 의도된 성관계는 아이들에 대 해. 또 아이를 기르고, 부부사이의 충실도를 기르고, 성적인 부도덕적을 통제하는데 있어 서 혼잡하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 운 것이다. 그것들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용 이하게하며 성관계에서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게 한다.

The classical legal term for the institution that Obergefell puts in the place of marriage is a "contubernium". Contubernium means etymologically "shacking up" lit sharing the tentboards, as it was used equally in the Roman army for the unit that shared a tent floor. With respect to civil law. the term was employed in Roman law to characterize the structured cohabitation of slaves under a master's permission. It was used in the place of marriage to remind Roman jurists that the relationship afforded no sexual duties or rights. Just as in modern marriage. there was no duty to create children, to remain sexually exclusive. There was no punishment for adultery nor any limit on termination and reformation of futher contubernia



결혼에 대해 Obergefell법원에서 도입 한 고전적인 법적 용어는 '콘투베르니움 (contubernium)'이다. 콘투베르니움의 의 미는 어원학적으로 '동거하다'이다. 부대가 텐트 바닥을 같이 썼던 로마 군대에서 사용 되었던 것처럼 텐트를 함께 쓰는 것이다. 민 법의 관점에서. 이 용어는 로마법에서 주인의 허락하에 노예들의 조직적인 동거생활을 특 징짓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로마 법 학자들에게 결혼의 개념에 대해 그 관계가 성 적인 의무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현대 결혼에 서와 같이. 자녀를 만들 의무도 없고. 성적인 순결의 상태로 남아있을 의무도 없었다. 그 곳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처벌도. 이후 콘투베 르니움의 해지와 개조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Slaves' rights in the relationship stood in the same relation as modern subjects to the state. Like a modern marriage a contubernium could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the master without cause, just like a modren "marriage" can be terminated by the state through unilaterally initiated no-fault divorce. It also created no legitimate children of the relationship. just like children born in a modern marriage are not distinguished from children born outside of marriage. (The Supreme Court has long since held that the disctinction between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ren is unconstitutional)

로마 군단의 가장 작은 조직. 8명의 구성원(contubernalis로 불림) 과 1마리의 노새(mule)로 구성되어 숙소를 함께 쓰고, 포상과 처벌 도 함께 반았다. [춬처: 네이버 엿어사전]

이런 관계 속 노예들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현대 주체들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 콘투베 르니움이 이유 없이 주인에 의해서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것처럼, 현대의 '결혼'은 시작된 쌍방의 잘못이 없는 이혼을 통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끝내질 수 있다. 또한 콘투베르니 움내 관계에서 합법적인 아이들을 만들지 못 하는 것처럼, 현대의 결혼 관계 안에서 태어 난 아이들이 결혼 외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 과 구분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합법적 자녀와 사생아들 사이의 구분이 위헌 이라는 판결을 유지해 왔다.)

This means that a master could decide what wa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and place the child with either the natural mother or father or someone else, depending on his judgment of "best interests". Like the contubernium of Roman slaves, the marriage of modern Americans cannot be entered without the state/master's permission or license; it lasts until the state/master ends it; it creats no rights and duties with respect to having children nor any necessary rights over the children of the marriage that cannot be ended when a no-fault divorce judge decides who best should raise the child.

이것은 주인이 그의 "가장 좋은 이익"에 관한 판단에 의지해서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가 장 좋은 이익"이었는지 결정하고, 생모,생부 혹은 다른 사람 중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 노예 의 콘트베르니움과 같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결혼은 국가나/주인의 허락이나 자격을 주는 것 없이는 허용될 수 없고 ; 국가/주인이 이 를 끝낼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결혼은 아이 를 갖는 것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 정하지 않았고, 판사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에만 끝나게 되는 쌍방의 잘못이 없는 이혼 관계 속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를 설 정하지 않았다.